




202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노무법인 天地



Index

01

컨설팅 배경

0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0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② :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의무

0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1. 컨설팅 배경

Q. 22.1.27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인가요?



사업주(경영책임자)란?

개인 사업장 : 개인 사업주
법인 사업장 : 법인 및
법인 대표자

의무사항이란?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
-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의무
- ③ 지자체 등이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
- ④ 안전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실시 의무

중대재해란?

- ① 1명 이상 사망한 재해
- ②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 ③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인 재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업주, 대표이사 개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
사망: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10억 이하의 벌금

1. 컨설팅 배경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처벌 사례

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1호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

법원은 사업주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났다고 보고,

- 1)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 안전관리책임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3) 안전관리자 5백만원의 벌금형
- 4) 법인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중대재해법 1호 판결, 대표에게 징역1년6월 집유3년(종합)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나왔다..."원청업체 대표 유죄"

②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2호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법원은 이전부터 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났다고 보고,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을,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함.

'중대재해' 원청 첫 실형... 반복된 산재에 철퇴
잘못 인정·유족과 합의에도 실형 못 막아...중대
재해법 2호 판결

1. 컨설팅 배경

Q.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22.1.27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24.1.27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수	(시장형+사서형) 50인 이상 수행기관 수	(시장형+사서형) 5인 이상 수행기관 수
188개	89개	1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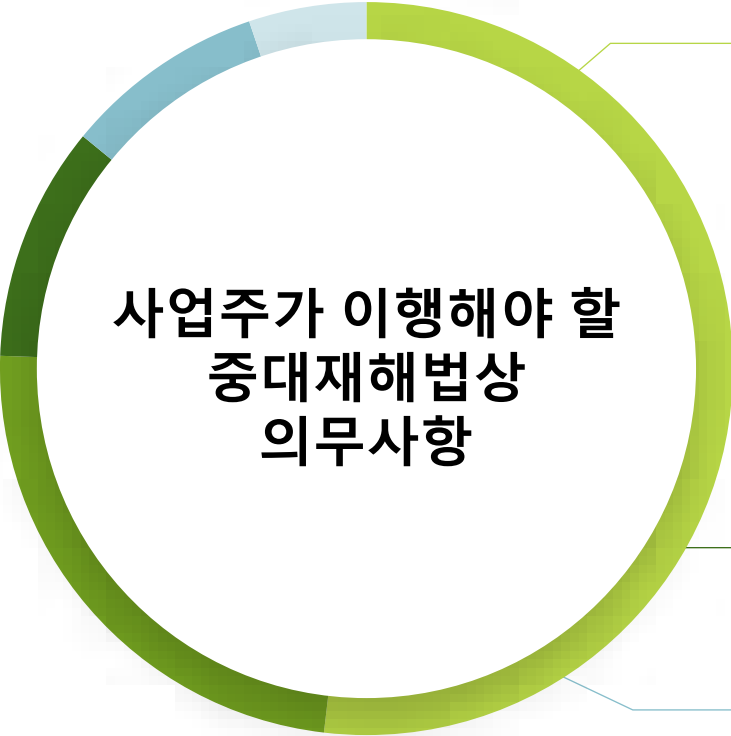
(23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2곳 중 1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4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

사고 발생 건수 *	사망사고 발생 건수	부상사고 발생건수	부상 유형	
			유형	건수
740건	14건	726건	골절	370건
			염좌	41건
			화상	15건
			뇌심혈관질환	11건

* 공익형 일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1. 컨설팅 배경

Q.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1.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수립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4. 안전보건예산 수립
5. 안전보건인력 선임
6. 안전보건 전문인력 권한 부여 및 평가
7.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청취
8.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수급인 안전보건능력 평가·점검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의무

1.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2. 대표자 안전보건교육 수강

지자체 등이
명한 사항의
이행 의무

1. 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2. 시정명령 이행 서류 제출, 보존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실시 의무

1. 안전보건관계법상 의무 이행여부 점검
2. 안전보건관계법상 교육 실시여부 점검

Index

01

컨설팅 배경

0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0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② :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의무

0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Q.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의무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 의무

의무사항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의무**

중대재해 발생 후 조치 의무

의무사항 ③



**안전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에 필요한 관리 실시 의무**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 의무

의무사항 ④



**지자체가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

중대재해 발생 후 조치 의무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안전보건예산 수립

안전보건인력 선임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의견청취

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1) 안전보건목표 설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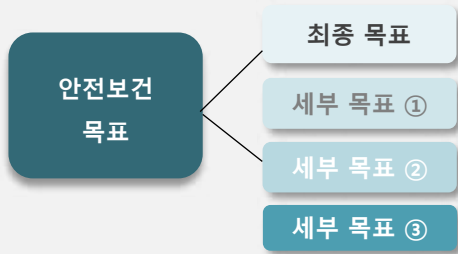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방법

※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목표는 최종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재해 예방 활동) 목표를 포
함하여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
정



안전보건 목표 설정 예시

안전보건 최종 목표는 재해율 감소로,
세부목표는 재해율 감소를 위해 정기적
으로 취해야 할 사항으로 설정

최종 목표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 달성
(재해율 20% 감소)

세부 목표

-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율 100% 달성
- ② 위험성평가 연간 1회 실시
- ③ 표준 작업지침 제정



안전보건목표 설정 (00 시니어클럽)

- 00 시니어클럽 안전보건 최종 목표는 재해율 20% 감소한 사망자 0명, 부상자 15명으로 설정
- 세부목표는 재해율 감소를 위해 00 시니어클럽 이 실시해야 할 사항들로 설정

	사고유형	22년
00 시니어클럽	사망	0명
	부상	21명

최종 목표

사망자 0명, 부상자 15명 달성

세부 목표

- ① 안전보건교육 100% 실시
- ② 위험성평가 연간 1회 실시
- ③ 표준 작업지침 제정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시 유의사항

※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와 신념을 반영해 작성

※ 중대재해법 벌칙서, 대검찰청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예시

타 복지재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아래와 같음.

○○복지재단

- ① 안전보건목표 설정
-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 ③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참여 보장

◇◇복지재단

- ① 안전보건법규 준수
- ② 잠재적인 위험요인 제거
- ③ 표준 작업지침 제정

[별첨] 시니어클럽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 결정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외부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정기적인 위험성 관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안전보건업무를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다.**

2023년 00월 00일

00사회복지법인 대표 000 (서명)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할 것



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일 것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 사업장

사회복지시설(시니어클럽)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의무

00	업종	인원 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전담조직 설치의무
시니어 클럽	사회복지 서비스업	709명	없음	없음
타 기관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없음	없음

* 단, 사회복지시설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조직 설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절차=위험성평가?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 받았다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을 반기 1회 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위험성평가를 반기에 1회, 1년에 2번 해야 하는 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되며, 반기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반기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기존 위험성평가 계획)

00 시니어클럽 월별 주요업무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형 위험성 평가				0							0	
사회서비스 위험성 평가				0							0	

변경 위험성평가 계획)

00 시니어클럽 월별 주요업무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형 위험성 평가				0								
사회서비스 위험성 평가				0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관련 최근 정부 기조 (중대재해 로드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 감독 시 i)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ii) 감소대책 (재발방지)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예정

검찰 및 법원 :

-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한 사업장의 형량 경감 가능
-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 및 제재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개정 (23.7.1. 시행 예정)

개정사항 ① : 위험성평가 방법 간소화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판단하는 위험성 3단계 판단 기법 도입 예정

개정사항 ② :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명확화

- 경미한 위험성,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최초 위험성평가 시기, 사업 성립일로부터 1개월로 확정

개정사항 ③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확대

- 과거와 달리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함.

- 최근 정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절차로서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을 23.7.1. 부로 시행할 예정임.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 (23.7.1. 시행 예정)



위험성평가 방법 간소화

기존 위험성 평가 방법 (3x3 위험성 추정 기법)

공정명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참기름 제조	1. 원료 입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2(중)	1(소)	2(낮음)
	2. 세척	작업장 주변 방해물에 의한 넘어짐	2(중)	2(중)	4(보통)
	3. 볶음	고온의 가열기 표면에 노출되어 화상 위험	2(중)	2(중)	4(보통)
	4. 압축	정비작업 시 불시 가동으로 인한 끼임, 감김 위험	2(중)	3(대)	6(높음)
투입작업 반복으로 인한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질환 위험		2(중)	1(소)	2(낮음)	

개정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기법)

구분	작업공정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참기름 제조	1. 원료 입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중
	2. 세척	물기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	중
	3. 볶음	볶음과정에서 호흡기 질환 위험	중
	4. 압축	연소의 착오로 착유기 폭발위험	상
기름 착유 중 화상 위험		중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에는 위험성을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산할 필요없이 상중하로만 판단하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사업장에서 좀더 간편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 (23.7.1. 시행 예정)



위험성평가 방법 간소화

기존) 위험성 결정 방법 (3x3 위험성 추정 기법)

구분	가능성	기준	X	구분	중대성	기준	=		대	중	소
상	3	(휴업을 요하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장기간 휴업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		상	높음(9)	높음(6)	보통(3)
중	2	(휴업을 요하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단기간의 휴업을 요하는 사고		중	높음(6)	보통(4)	낮음(2)
하	1	(휴업을 요하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음		소	1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사고		하	보통(3)	낮음(2)	낮음(1)

개정) 위험성 결정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기법)

	구분	기준	감소대책 수립·실행시기
위험성 결정	상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사고	즉시 감소대책 수립, 실행
	중	입원치료를 요하는 사고	빠른 시일 내 감소대책 수립, 실행
	하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사고	현상 유지 가능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기법 도입을 통해 기존 3X3 위험성 추정 기법을 사용할 때 문제였던 위험성을 결정하기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은빛 세차단) 위험성 평가 예시 (개정 사항 반영)

1.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경우, 사전 준비단계에서 위험성평가 규정 마련과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준비 ① : 위험성평가 규정 마련

위험성평가는 평가 전에 마련한 위험성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함.

* 위험성평가 규정, 별도 제공



● 사전준비 ②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지침 제7조 (평가방법)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교육시간	비고
위험성평가 교육	사업주 교육	2시간	안전보건공단 무료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 16시간 (서비스업) 8시간	민간기관 유료 교육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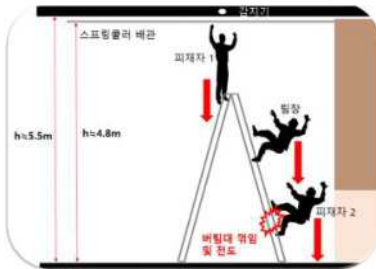
00 시니어클럽(은빛 세차단) 위험성 평가 예시 (개정 사항 반영)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는 과거 사고를 발생시킨 위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위험을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선 각 사업단 방문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위험성평가방법 활용 *

● 자동차 세차업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 사다리 사고

2022.00.00. 지붕 청소(2.5m)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고압살수기로 물청소를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산업안전공단 재해사례)



● 자동차 세차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 화재·폭발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세차를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은 직원이 LP 가스통이 설치된 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킴.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봄.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은빛 세차단) 위험성 평가 예시 (개정 사항 반영)

3. 위험성 결정

구분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은빛세차사업단	1. 차량 인수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중	안전통로 확보/ 2인 1조 차량 인수	-
	2. 세차	고온 스팀세차 머신으로 인한 화상 위험	중	보호구(팔토시) 지급	-
		세차약품이 피부에 닿아 피부질환 발생	중	유해성 제거한 약품 사용	아차사고 발생요인
		세차약품 사용에 따른 호흡기질환 발생	중	보호구(마스크) 지급	-
		인화물질 사용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	상	인화물질, 차량 적재 금지	중대재해 유발요인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중	보호구(의자) 지급	-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문에 찰음 발생	중	안전교육 실시	아차사고 발생요인
		사다리 사용시 추락 위험	상	안전모 착용 후 사다리 작업 실시	중대재해 유발요인
		외부 근무에 따른 일사병 발생 위험	중	혹서기 용품 지급, 폭염시 작업중지	-
	3. 차량인계	바닥 물기 방치로 미끄러짐	중	미끄럼 방지화 착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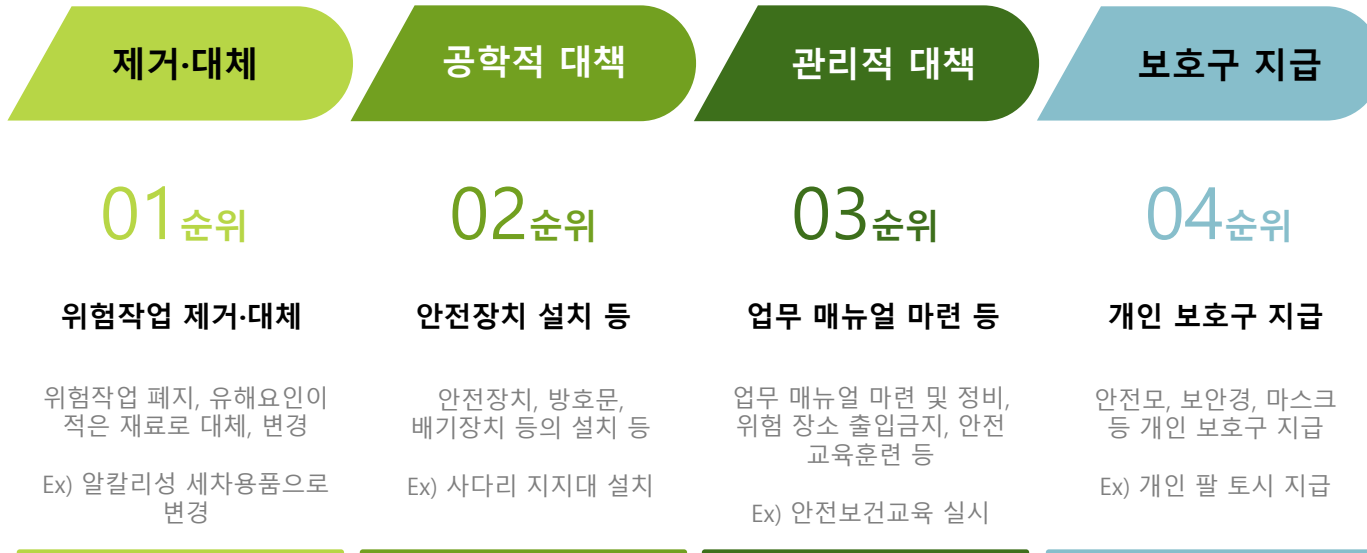
위험성은 상중하로 나누어 결정하며, 사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는 상, 발생시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는 재해는 중, 찰과상 등 경상을 입는 재해는 하로 결정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은빛 세차단) 위험성 평가 (개정 사항 반영)

4.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은 위험작업 제거·대체 → (제거·대체가 어려운 경우) 안전장치 설치 → (안전장치 설치도 어려운 경우)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적 대책 → (관리적 대책도 어려운 경우) 개인 보호구 지급 방법으로 수립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은빛 세차단) 위험성 평가 (개정 사항 반영)

5. 감소대책 실행 및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시 기록표 작성 예시>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시 현황 (※ 사진 등 증빙 첨부)	시행일	담당자
차량인수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2인 1조 차량 인수	(사진)	23.00.00.	000
세차	인화물질 사용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	인화물질, 차량 적재 금지	(사진)		
차량인계	바닥 물기 방치로 미끄러짐	미끄럼 방지화 착용	(사진)		

- 감소대책 실행자료는 위험성평가표, 유해위험요인 파악 기록(재해내역, 설문조사지 등)과 함께 서면으로 만들어 3년간 보존해야 함.
- 또한 감소대책 실행표와 위험성평가 결과는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 주지시키고,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도 추가하여야 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명품기름) 위험성 평가 (개정 사항 반영)

명품기름 위험성평가

구분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시일자	담당자
명품기름	1. 원재료 입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중	2인 1조 작업 실시, 스트레칭 교육		
	2. 세척	물기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	중	미끄럼 방지화 착용		
		세척기 열 발생에 따른 화상 위험	중	보호구(장갑) 지급		
		세척기기에 손 끼임 위험	상	업무 수행 매뉴얼 구비		
	3. 볶음	연기에 따른 호흡기 질환 위험	중	환기장치 설치		
	4. 압축	깻묵 잔열로 인한 화재 위험	상	소화기 비치, 깻묵 서늘한 곳에 보관		
		기름 착유 중 화상 위험	중	보호구(장갑) 지급		
	5. 포장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중	스트레칭 실시, 휴게시간 부여		
		완제품 계단 이동시 넘어짐 위험	상	2인 1조 작업 실시, 이동작업 제거		
	6. 배달	배달 중 교통사고 위험	중	안전교육 실시		

- 명품기름 사업단의 경우, 볶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과 과거 발생한 깻묵 잔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음.
- 위 2가지 위험성에 대하여는 즉시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명품기름) 위험성 평가 (개정 사항 반영)

※ 명품기름 주요 유해위험요인

● 참기름 제조업 등에서의 중대재해 : 조리흡에 의한 폐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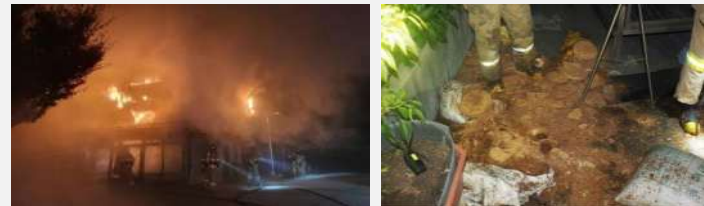
약 16년 동안 조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볶음 업무 등을 하며 미흡한 배기장치에 의한 조리흡 중 미세분진, 초미세분진, PAHs,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16년 9월 폐에 비소세포암(선암종)을 진단받음. (안전보건공단, 직업병 사례)



● 참기름 제조업 등에서의 중대재해 : 화재·폭발

2018년 6월 15일, 기름을 만들고 남은 깻묵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3곳으로 옮겨 붙어 포장지 제조공정과 코팅기, 인쇄기, 기계류 등 태워 138억원의 피해를 냈. 검찰은 기름 제조작업을 진행한 직원 A씨와 공장 대표 B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해 A,B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음.

<깻묵에 의한 화재 사례>



- 조리흡에 의한 호흡기질환과 깻묵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는 참기름 등을 제조하는 사업단에 있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험요인이므로, 위험성평가 시 위 두 요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토스트앤친구들) 위험성 평가 (개정 사항 반영)

위험성 평가 예시

구분	작업공정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시일자	담당자
토스트&친구들	1. 식재료 입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중	보조도구(접이식 끌차)를 사용하여 소량 운반 권고		
	2. 세척	물기로 인한 미끄럼 위험	중	물기 제거, 미끄럼 방지화 착용		
	3. 조리	조리시 화구 및 인덕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 노출 칼 사용에 따른 베임 위험 장시간 서서 작업함에 따른 다리 통증	상	소화기 비치, 안전교육 실시		
			하	보호구(장갑) 지급		
			하	휴게시간 및 적절한 휴게장소 부여		
	4. 포장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중	스트레칭 실시		
5. 식기류세척 및 뒷정리	이물질, 기름기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우려	중	미끄럼 방지화 착용			

- 토스트앤친구들 사업단의 경우, 조리 시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화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조리기구 사용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업장 내 소화기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의무 : 위험성 평가

00 시니어클럽(공동작업장1) 위험성 평가 (개정 사항 반영)

위험성 평가 예시

구분	작업공정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시일자	담당자
공동작업장	1.원자재 입고	원자재 차량(트럭) 하차 과정에서 넘어짐 등 추락사고 위험	중	이동식 계단 비치		
	2.쇼핑백 접지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중	스트레칭 실시		
	3.쇼핑백 타공	타공기 소음에 의한 난청 위험	중	보호구(귀마개) 제공		
		타공기 사용 중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	중	방호장치 설치, 보호장갑 제공		
	4.쇼핑백 포장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중	스트레칭 실시		
		포장용 커터칼 사용 중 베임 위험	하	보호구(장갑) 지급		
		포장용 상자 적재 중 무너짐에 의한 깔림 위험	중	적재 공간 별도 마련, 출입 통제		
	5.상품 출고	출고물품(상자) 차량(트럭) 상차 과정에서 넘어짐 등 추락사고 위험	중	이동식 계단 비치		
6.전자부품 조립	수공구 사용 중 신체(손가락 등) 부상 위험	하	보호구 지급			

- 공동작업장1의 경우 타공기 사용 중 손가락 끼임 위험과 상자 내부 적재에 따른 무너짐, 깔림 위험성이 가장 높음.
- 위 위험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안전보건예산 편성·집행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구분	예산 항목	세부 항목
인력시설 분야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노후 안전장비의 정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노후 생산시설 교체 비용은 불포함)
	안전검사 실시	안전점검 위탁 및 실시 비용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안전난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건비
안전 분야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외부 안전교육비용
	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안전 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외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 보호구 구입	안전모, 보안경, 냉난방 용품, 마스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건 분야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위탁 비용 등
	특수건강검진 실시	특수건강검진 위탁 비용 및 사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스트레칭 용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비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기타	안전보건 캠페인 지원	안전보건 현수막 및 안전표지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예비비	예비 비용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안전보건예산 편성·집행 의무

Q&A (1)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인 대표자) 인건비, 안전보건예산 포함여부 : (X)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Q&A (2)

- ▲ 전기·소방 점검 비용의 안전보건예산 포함여부 : (X)

귀 질의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Q&A (3)

- ▲ 방한모, 방한화 및 방한장갑 등의 안전보건예산 포함여부 : (O)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혹서기 용품도 안전보건예산으로 사용 가능

Q&A (4)

- ▲ 안전보건교육비 및 교통비의 안전보건예산 포함여부 :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사용할 수 있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안전보건예산 편성·집행 의무

구분	관	항	예산과목	세부내용	세부내역(원)	예산(원)	안전보건예산 여부
1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수선비	178,160×1회	178,160	X
			제세공과금	종합안전배상공제보험	3×1회	3,200,000	O
2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노후 냉난방기수리 등	700,000×1회	700,000	X
3	사업비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외부교육참석	10,000×10회	100,000	O
				외부교육참석	100,000×12회	1,200,000	O
		사회서비스형	지역아동센터도우미	교육비	100,000×3회 3,000×15명×3회	435,000	O
			장애인시설도우미	교육비	3,000×62명×3회	558,000	O
			아동그룹홈도우미	교육비	3,000×26명×2회	156,000	O
			시니어서포터즈	교육비	3,000원×36명×4회	432,000	O
				배상책임보험	6,000원×36명	162,000	O
			은빛교육서포터즈	교육비	3,000×20명×4회	240,000	O
			시니어우체국도우미	교육비	3,000×15명×4회	180,000	O
				배상책임보험	6,000×15명	67,500	O
			시니어안전모니터링	교육비	3,000×20명×3회	180,000	O
시니어산재가이드	교육비	3,000×20명×3회	180,000	O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	-	-	예산 없음		
총 계						19,535,500	

- 00 시니어클럽 안전보건예산항목에는 안전보건예산이 아닌 노후 시설 수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은 안전보건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장형 사업단은 안전보건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안전보건예산 편성·집행 의무

구분		예산과목	세부내용	세부내역(원)	예산(원)	비고	
1	시장형 사업단	안전보건예산	명품기름	교육비	정기 안전교육	3,000x10명x4회	
				보호구 구입비	마스크 구입	1,000x10명	
			토스트야	위험성평가비	위험성 평가	50,000x1회	
			건강미누릉지	교육비	정기 안전교육	3,000x9명x4회	
				노후시설 교체비	소화기 교체	30,000x1회	
			공동작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비	스트레칭 용품 구입	30,000x1회	
					스트레칭 교육비	3,000x250명x2회	
			꽃빛공원휴게소	안전시설 설치비	안전 바 구입	100,000x1회	
			카페화랑	안전표지비	안전표지 구입	3,000x1회	
			맛사랑공사랑	보호구 구입비	베임 방지용 장갑 구입	3,000x10명	
			아파트실버택배	교육비	정기 안전교육	3,000x12명x4회	
				보호구 구입비	방한모 구입	3,000x10명	
			은빛세차사업단	교육비	정기 안전교육	3,000x12명x4회	
				보호구 구입비	팔토시 구입	3,000x10명	
			실버마켓터	보호구 구입비	햇팩 구입	3,000x10명	
			GS편의점	휴게시설비	의자 구입	3,000x10명	
			화랑찬방	보호구 구입비	베임 방지용 장갑 구입	3,000x10명	
			예비비	예비 비용	사고 발생 대비 등	예산 총액의 5%	

- 시장형 사업단 안전보건예산에는 안전보건교육비, 보호구 구입비, 휴게시설비, 안전시설 설치교체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여유가 된다면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안전보건예산 총액의 5%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01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의미함.

안전보건 전문인력, 권한 부여 방법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권한은 임명장 부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권한(업무 범위) 명시 등의 방법으로 함.

02

03

안전보건 전문인력, 예산 부여 방법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업무수행(안전 점검 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함.

안전보건인력 평가방법

평가자: 직근 상급자
(ex. 관리감독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대표자)
평가시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

04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의무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기준>

<00 시니어클럽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의무>

전문인력	선임의무 있는 사업장		시니어클럽 담당인력	구분	업종	인원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제조업	50인 이상	시설장	명품기름	식품제조업	19	X	O	X
				건강미누룽지					
	사업지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상		토스트앤친구들	음식점업	57	X	O	X
		꽃빛공원휴게소							
		카페화랑							
		맛사랑콩사랑							
	그 외 업종	100인 이상		화랑찬방					
관리 감독자	모든 사업장		팀장 (사업단 담당자)	아파트실버택배	택배업	12	X	O	X
				은빛세차사업단	자동차세차업	12	X	O	X
				실버마케터	도소매업	36	X	O	X
GS시니어편의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	화랑멀티빨래방	개인서비스업	12	X	O	X
				공동작업장	사업지원서비스업	250	X	O	X

- 00 시니어클럽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각 사업단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관리감독자는 각 사업단을 담당하는 팀장 급 직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의무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기준 및 평가표>

직책	담당 업무	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작업복·보호구 착용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며, 개선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나 개선사항이 일부 존재함				
불량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별도 제공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의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대표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4. 13: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피고인 주식 회사 아○○○○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로 하여금 위 건물 5층 내부 개구부에 서 약 16.5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 몸통 등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대표자: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실질성 쇼크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최근 법원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반드시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표를 구비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안전보건인력 선임 사업장 및 자격요건>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 있는 사업장		자격 요건
	제조업, 소매업,음식점업 등	사업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업	
안전관리자	50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없음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
보건관리자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또는 간호사 3.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산업보건의			의사 (단, 기업규제법에 따라 자율 고용 가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환경복원업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시설 내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단,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위탁 관리 가능하며, 위탁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가능)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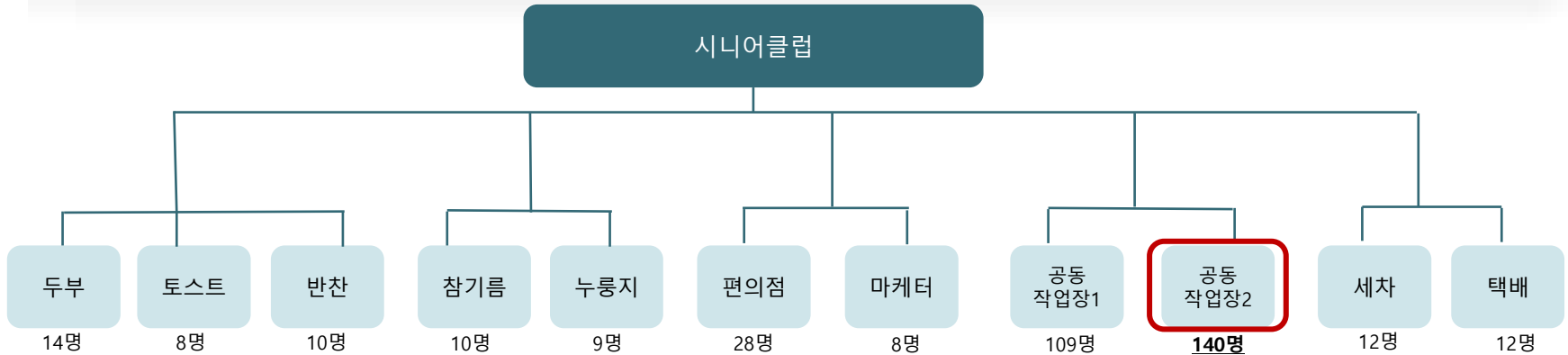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 시니어클럽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업종)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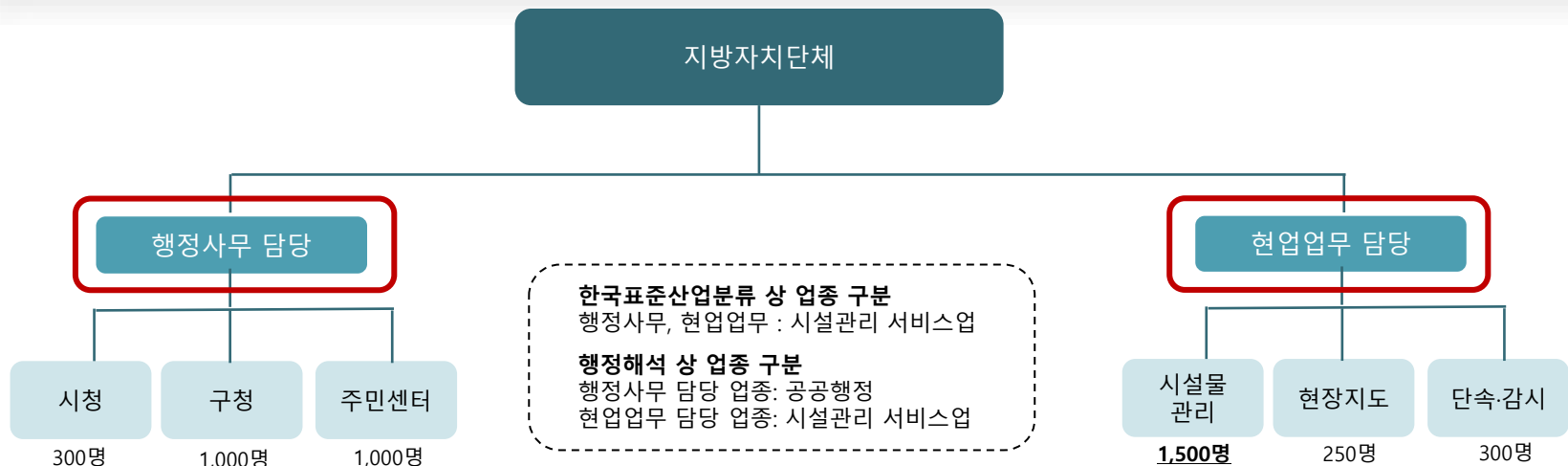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00 시니어클럽의 업종은 공동작업장2의 업종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일괄됨.
- 이 경우 각 사업단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 시니어클럽 업종 판단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018, 회시일자 : 2018-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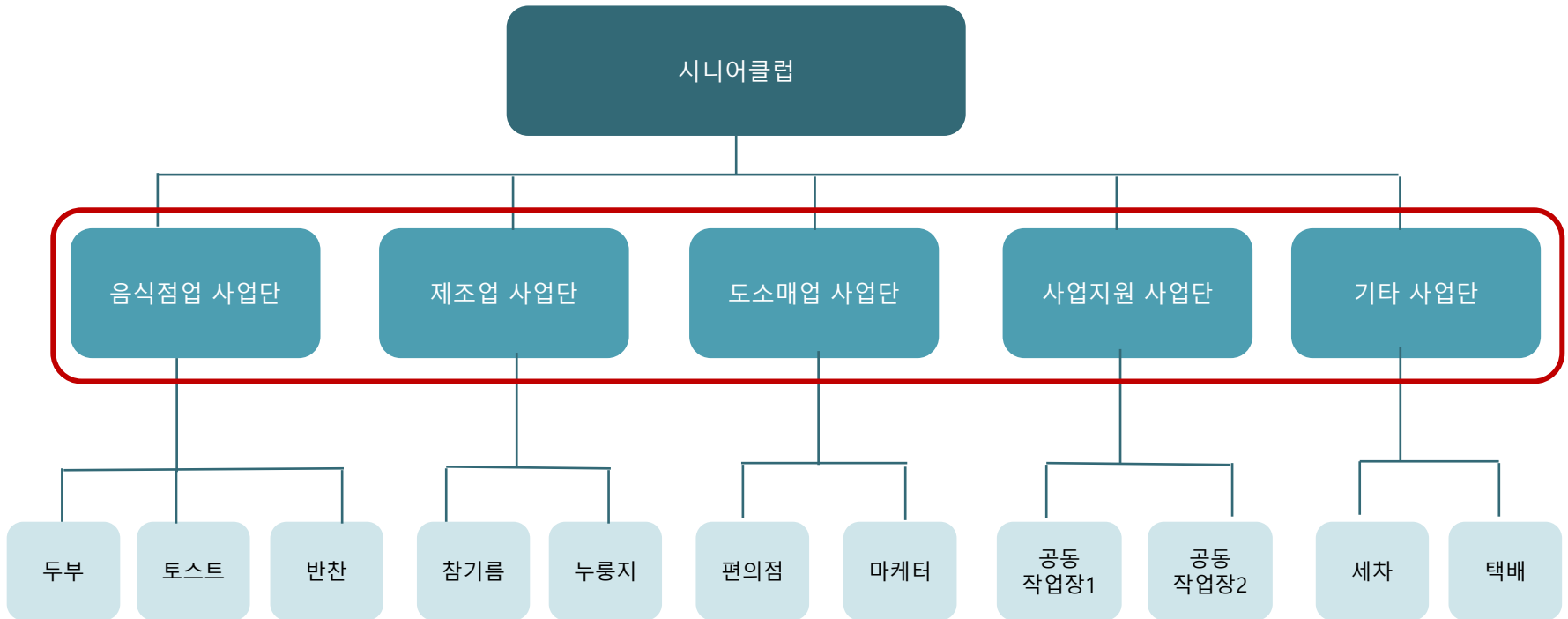
1.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2.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다양한 현업 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노동부는 근로형태 등이 다른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 업무별로 업종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같은 지자체 사업장이더라도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공공행정, 현업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시설관리업이 적용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 시니어클럽 업종 판단



- 시니어클럽은 여러 사업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노동부 행정해석처럼 각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음식점 사업단은 음식점 사업단끼리, 제조업 사업단은 제조업 사업단끼리 각각 묶어 업종을 정한 후 그 업종에 따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00 시니어클럽 사업단 업종 분류 및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

구분	업종	인원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명품기름	식료품제조업	19	X	X	X	X
건강미누룽지						
토스트앤친구들	음식점업	57	O	O	O	X
꽃빛공원휴게소						
카페화랑						
맛사랑공사랑						
화랑찬방						
아파트실버택배	택배업	12	X	X	X	X
은빛세차사업단	자동차세차업	12	X	X	X	X
실버마켓터	도소매업	36	X	X	X	X
GS시니어편의점						
화랑멀티빨래방	개인서비스업(세탁업)	12	X	X	X	X
공동작업장	사업지원서비스업(포장업)	250	X	X	X	X

- 00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종사자 수에 비추어 봤을 때 음식점업 사업단에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00 시니어클럽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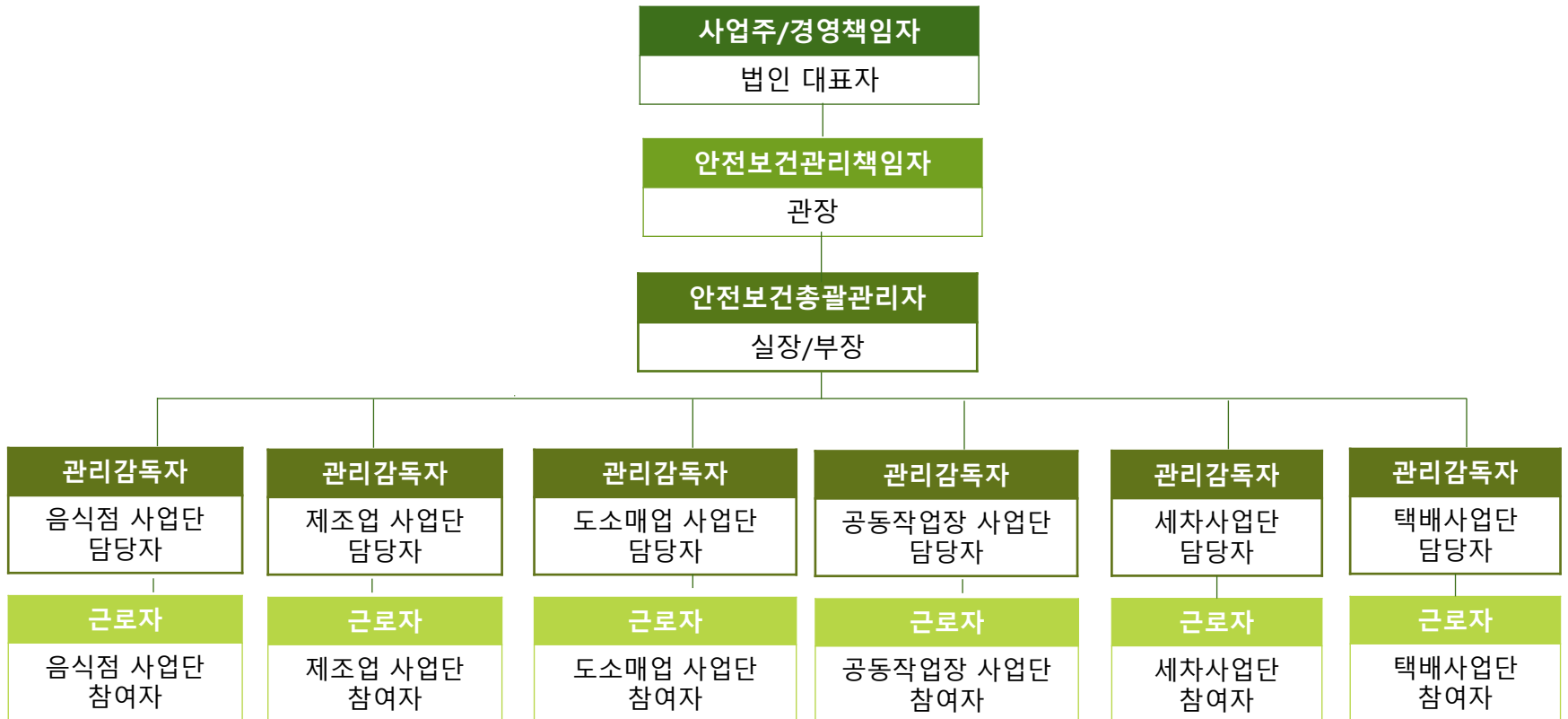
구분	1일 근무 인원	근무일수 (4월)	상시근로자 수	총 인원수	업종	인원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
토스트앤친구들	2명	20일	40명/20일=2명	23명	음식점업	23명	안전관리자	X
꽃빛공원휴게소	5명	25일	125명/25일=5명					
카페화랑	6명	25일	150명/25일=6명					
맛사랑콩사랑	7명/ (토) 3명	25일	[(7명*20일)+ (3명*5일)]/25일=6명					
화랑찬방	4명	20일	80명/20일=4명					
							보건관리자	X
							산업보건의	X
							안전보건관리담당자	X

-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음식점업 사업단의 근로자수를 산정해보면 음식점업 사업단 근로자는 50인 이하로 안전보건인력 선임의무가 없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 안전보건 조직

<00 시니어클럽 안전보건 조직도(시장형 기준)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 안전보건인력 선임 의무 : 안전보건인력 수행 업무

<00 시니어클럽 안전보건인력의 수행 업무(시장형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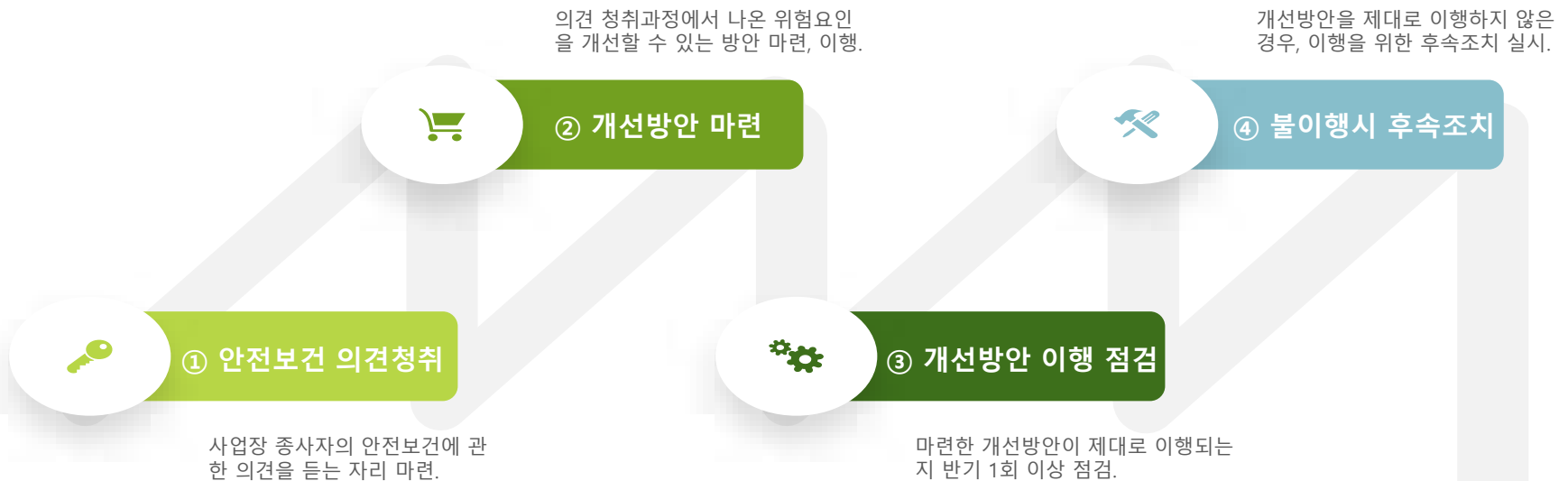
구분	00 시니어클럽	수행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경영자 보고(안전보건예산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실장/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점검 산재 발생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 해당연도 재해율 및 사고사례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실행여부 점검 등) : 위험성평가 담당자 각 사업단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위험성 개선방안 수립·이행 점검
관리감독자	각 사업단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사업단 기계설비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 지시 및 착용여부 점검 각 사업단 정리정돈 여부 확인 산재 발생시 상급자·노동부 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지 각 사업단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각 사업단 안전보건 간담회 실시
근로자	각 사업단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감독자 지시 이행 안전보건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참여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시니어클럽
대표자

시니어클럽
총괄담당자

사회서비스형
관리감독자

제조업
관리감독자

음식점업
관리감독자

기타 사업
관리감독자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사회서비스형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음식점업
종사자

공동작업장
종사자

기타 사업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위원은 각각 3명 이상 10명 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각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노사협의회를 거쳤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3145)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 : 안전보건 간담회

- 간담회도 안전보건 의견청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 또는 간담회, 특히 작업 전 안전미팅 (TBM: Tool Box Meeting)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고용노동부)

-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해야 되나요?

간담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는 간담회 진행 결과 등을 서면으로 기록,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간담회 일지 양식, 별도 제공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업단의 안전보건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함께 각 사업단별로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보건간담회 진행 후에는 간담회 일지를 기록해 그 내용 등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8)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구분	단계	행위주체	내용	소요시간
① 사고 보고 및 대피 방법	최초 발견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사업장 내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발견	-
	화재 진화 및 대피		1.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 외치며 주변 동료에게 화재 알림 2. 작업 중지하고 소화기, 물,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 진화 3. 불씨가 큰 경우, 진화 시도 없이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계단으로 대피	발견 즉시
	사고 보고	관리감독자	1.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 사고 보고 (보고체계) 119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보고내용) 00 사업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 후 즉시
	사고 전파	관리감독자	대피방송 실시	
② 기본적인 응급조치	재해자 파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 담당자	1. 재해자 인원 수 및 인적사항 파악 2. 인근 병원에 환자 발생 안내 및 협조 요청 119 도착 시 재해자 위치와 상황 설명 구조자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후 내부 진입 구조된 환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외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의식이 없는 경우) 구급차가 올 때까지 AED를 이용해 심폐소생술 실시 (화상을 입은 경우) 의복은 벗기지 말고 그 상태에서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금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대기 (실제 상황) 구급차로 환자 이송	재해 발생 5분 이내
	구호조치		구급차가 올 때까지 대기	재해 발생 30분 이내
③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출입 통제 표지판 등을 이용해 다른 종사자의 출입 통제 및 현장 보존	구호조치 종료 후
	원인조사 및 개선	안전보건총괄 담당자	1. 인화물 반출 및 소화작업 후 잔여물 제거 후 원인 조사 2. 원인 파악 후 개선 조치 실시	수습 완료 후

Index

01

컨설팅 배경

0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0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② :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의무

0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1) 안전보건법상 이행해야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교육 시간		비고
		제조업	환경복원업	자동차세차업	택배업	시설관리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5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이상		6시간 (선임 후 3개월 내)	6시간 (매 2년)	-
안전관리자	제17조	50명 이상						해당 없음				34시간 (선임 후 3개월 내)	24시간 (매 2년)	300인 미만 사업장, 위탁관리 가능
보건관리자	제18조	50명 이상						해당 없음				34시간 (선임 후 3개월 내)	24시간 (매 2년)	
산업보건의	제22조	50명 이상						해당 없음				-		
관리감독자	제16조	모든 사업장										매년 16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20명 이상 50명 미만		해당 없음						16시간 (선임 전)		8시간 (매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100명 이상						300명 이상				-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100명 이상						300명 이상				-		-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5명 이상			50명 이상				해당 없음		분기 6시간 8시간 (채용시)		2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시						해당 없음		4시간		12시간	-	
법령 요지의 게시	제34조	모든 사업장										-		-
위험성평가 실시	제36조	모든 사업장										-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7조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이 있는 모든 사업장										-		-
안전보건조치	제38,39조	모든 사업장										-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조치	제41조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사업장										-		-
msds 게시 및 교육	제114조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		-
휴게시설 설치	제128조의2	2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배달원, 청소원 등이 2명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										-		-
일반 건강진단	제129조	모든 사업장										-		-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2)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견 청취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현행

▲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제조업) : 50인 이상 사업장

(기타 산업) : **1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

정부 개편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안)

(제조업) : 30인 이상 사업장

(기타 산업) : **3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에 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산안위 구성의무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 현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업: 300인 이상 사업장
기타 업종: 100인 이상 사업장

정부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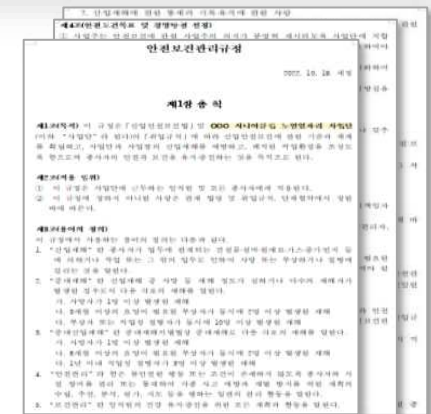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확대(안)

모든 업종: 10인 이상 사업장

*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예시>

구분	작성 내용	세부 내용
안전보건 관리규정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조직, 인력의 권한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내용, 강사 등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설비 설치, 근로자 건강진단 등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문서 보존기간, 포상·징계



- 최근 정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사업장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기관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유형>

교육 대상	실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	직무교육	취임일 3개월 이내 6시간	2년 마다 6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환경복원업	직무교육	선임 전 교육 16시간	보수교육 2년 마다 8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권한 등
관리감독자	5인 이상 제조업, 세차업, 시설관리업 또는 50인 이상 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환경복원업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 등
종사자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직) 외 종사자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매 분기 6시간 이상	매 분기 3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교육 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이상 택배업 (도급계약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최초 노무제공시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교육 내용 및 채용시 교육 내용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무가 있는 사업단에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교육 대상	교육 실시자	교육 시간 및 방법		교육 신청 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부강사	(대면) 6시간	(대면) 6시간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 수강신청
		선임 전 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외부강사	(대면) 16시간	(대면) 8시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
		(대면, 인터넷, 비대면 실시간) 분기별 6시간		
관리감독자	외부강사	(인터넷) 8시간 (대면) 8시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면, 인터넷, 비대면 실시간) 분기별 6시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면) 2시간		-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무가 있는 사업단에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안전보건교육

<00 시니어클럽이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구분	업종	인원	교육의무			
			관리자교육	정기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00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명품기름	식품제조업	○ (선임의무가 있는 경우)	○	○	
	건강미누룽지					
	토스트앤친구들	음식점업		○	○	
	꽃빛공원휴게소					
	카페화랑					
	맛사랑콩사랑					
	화랑찬방	택배업		○	○	
	아파트실버택배					
	은빛세차사업단	자동차세차업		○	○	
	실버마케터	소매업		36	X	X
	GS시니어편의점					
	화랑멀티빨래방	개인서비스업 (세탁업)		12	○	○
공동작업장	사업지원서비스업 (포장업)	250	X	X		

- 00 시니어클럽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없으나 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실버 마케터, 편의점,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단 모두 실시하여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안전보건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배분 예시>

항목	2023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 내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직무 스트레스 예방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교육	msds교육	교통사고 예방교육	직업병 예방교육	표준작업 방법교육	위험기계 교육	사고사례 교육	추락방지 교육	화재 예방교육	위험요인 교육
교육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분기별 총 교육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또는)

항목	2023년			
월	1월	4월	7월	10월
교육 내용	사고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직무스트레스예방교육	고객응대근로자 교육 산재보험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통사고예방교육 위험성평가결과교육 Msds교육	직업병예방교육 화재예방교육 위험기계 작동 교육
교육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분기별 총 교육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월 2시간씩 실시하거나 3개월마다 6시간씩 실시해 분기별 교육시간 6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안전보건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시 참고 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자료 검색

- 정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에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다운 가능
- 분야별, 업종별, 직종별, 유해·위험기계기구별 등과 형태별로 OPL, 동영상, 포스터, 표지 등 다양한 형태로 각종 자료들을 보급하고 있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및 보존

-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및 보존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에는 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함. 교육 일지에는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함.
- * 교육일지 양식, 별도 제공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안전보건교육일지					월	일	년	월	일	점	분
작성일자 : 2013. 12. 20					작성자 :						
부서			직책			교육 대상			교육 일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실시장소			비고		
교육 실시장소			교육 실시시간			교육 실시인원			교육 실시비고		
교육 실시장소			교육 실시시간			교육 실시인원			교육 실시비고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NO	이름	성명	서명	NO	이름	성명	서명	NO	이름	성명	서명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교육사진>

<사진1>

<사진2>

-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정기 안전보건교육 후에는 반드시 교육일지를 작성해 보존해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4)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1.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
2.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을 2명 이상 사용하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제재>

구분	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벌칙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건당 50만원	위반 건당 250만원	위반 건당 500만원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4)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휴게시설 설치

<00 시니어클럽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구분	인원	휴게시설 설치의무	비고
명품기름	10	X	
건강미누룽지	9	X	
토스트앤친구들	8	X	
꽃빛공원휴게소	9	X	
카페화랑	16	X	
맛사랑콩사랑	14	X	
화랑찬방	10	X	
아파트실버택배	12	X	
은빛세차사업단	12	X	
실버마케터	8	X	
GS시니어편의점1호점	14	X	
GS시니어편의점2호점	14	x	
화랑멀티빨래방	12	X	
공동작업장1	140	O	휴게시설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공동작업장2	109	O	

-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장소 단위로 판단하는데 공동작업장1,2 사업단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
- 공동작업장 사업단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고용노동부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4)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법상 의무 :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구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조의2])
1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2평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3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4	휴게시설이 화재, 폭발 위험 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다.
5	휴게시설은 여름철 20~28°C, 겨울철 18~22°C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추고 있다.
6	휴게시설에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다.
7	휴게시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다.
8	휴게시설 내 환기가 가능하다. (창문, 공기청정기 비치 등)
9	휴게시설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작업현장 또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지 않음)
10	휴게시설 내 의자, 소파, 테이블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11	휴게시설 내 음용이 가능한 물(생수)을 제공하거나 정수기 등을 갖추고 있다.
12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13	청소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하고 있다.
14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휴게공간 외 창고, 탈의실 등 다른 목적으로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단에서는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5) 00시니어클럽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법상 의무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조치

구분	고객응대업무 유무	
00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명품기름	X
	건강미누룽지	X
	토스트앤친구들	O
	꽃빛공원휴게소	O
	카페화랑	O
	맛사랑공사랑	O
	화랑찬방	O
	아파트실버택배	X
	은빛세차사업단	O
	실버마케터	O
	GS시니어편의점 1호점	O
	GS시니어편의점 2호점	O
	화랑멀티빨래방	X
	공동작업장1	X
공동작업장2	X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문구 예시>



- 00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은 일부 사업단을 제외하고 모두 고객과 직접 대면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시니어클럽에서는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매뉴얼 마련, 보호문구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6) 00시니어클럽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법상 의무 : MSDS 게시·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혼합물

(단, 화장품이나 일반 소비자용 생활용품 등은 제외)

→ 00 시니어클럽의 경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은빛세차단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함.

▲ 청소용품이나 세차용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인지?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청소, 세차용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요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함.** (msds q&a, 고용노동부)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은빛 세차 사업단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의무를 부담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6) 00시니어클럽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법상 의무 : MSDS 게시·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직접 작성X (제품 판매자 또는 제조사에 MSDS 제공 요청)
- 제공받은 MSDS는 사업장 내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해 종사자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MSDS 교육 시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최소 1~2시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MSDS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시간만큼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 MSDS 교육 시기

-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MSDS 교육 내용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업장 내(세차 차량 등)에 비치해 두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교육일지로 만들어 5년간 보존함.

3.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7)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자료 보존 기한

구분	보존해야 하는 안전보건자료	보존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 및 점검자료	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및 개선조치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유해위험교육 실시 점검 및 개선조치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2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3년
	위험성평가표, 유해요인 조사,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서류 제외)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5년

Index

01

컨설팅 배경

0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0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② : 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의무

0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1)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 ① 작업 중지

산안법상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안법 또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

사업주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근로자 : 근로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
- 근로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를 이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없음.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2)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 ②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시 '지체없이'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09-10)

→ 통신 불가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해 발생 사실을 알자마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사망원인이 산재에 의한 것인지 개인 질병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재 확정사실을 안 시점부터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209)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시점으로 함

- 사업주는 근로자 대피 후 즉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함.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3)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 ③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한 뒤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산업재해조사표)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중대재해 발생 보고)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과-641)

●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 1)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임.
- 2) 단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님.

-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함.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3)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 ③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p>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p> <p>문서번호 : 20_____</p> <p>수 : 선 :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산재예방지도과공)</p> <p>분 : 선 :</p>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업종명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입사일	입사일자	재해일자	재해장소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발생시	장소	발생원인	발생과정	발생장소	발생시간	발생장소	발생장소
재해발생 인적사항 : 재해발생경위 (8대 분야) 조치 및 현상 기타 중요한 사항(경유서 조사결과 등)							
이 보고를... 사업장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휴대폰 :)							

<산업재해조사표>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첨 제20호 제11 조제 2019. 11. 19.)</p> <p>산업재해조사표</p> <p>주요 목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p>			
1. 사업장 정보	2. 재해자 인적사항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4. 기타 중요한 사항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장형태 사업장규모 사업장종류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입사일 입사일자 재해일자 재해장소	재해발생 인적사항 재해발생경위 (8대 분야) 조치 및 현상 기타 중요한 사항(경유서 조사결과 등)	기타 중요한 사항(경유서 조사결과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의 관)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등 위반시 제재>

보고의무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서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산업재해 조사표 미작성시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산업재해 조사표 거짓 작성시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 중대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은 위 양식에 따름.
- 중대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해 발생시 사업장에서는 잊지 않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 ④ 산재보험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은 건강보험(공상 처리)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함.

의무사항 ①

▲ 건강보험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

건강보험 처리 후 산재발생보고까지 하지 않는 경우 산재 은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의무사항 ②

▲ 건강보험 처리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사업주에게 환수처리 가능)

의무사항 ③

▲ 근로자와 합의 하에 공상(건강보험X)처리한 경우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됨. (산업안전팀-791)

-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치료비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건강보험 처리 후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 은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음.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5)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 ⑤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법원 입장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및 그 사업장 대표자, **주식회사 온○○○○○, 정○○이**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 3254 판결)

중대재해 발생 후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양형 판단 시 사업장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방법

1. 사고 원인 분석
2. 해당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작성 예시) 추락사 발생

사고 원인 :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예방 대책 : ① 안전대 착용 지시 감독

② 안전작업지시서 작성

③ 카메라 출동 벌금 부과제 도입

*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서면으로 노동부에 보고**

별첨 자료 목록

0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02

위험성평가규정, 위험성평가표(4개 사업단), 감소대책 실시 기록지 양식

03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및 평가표

04

안전보건 조직도

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06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07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일지,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

08

중대재해 조사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